#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96

발의연월일: 2021. 2. 15.

발 의 자: 박완주·서영교·오영환

김민철・이정문・안규백

이성만 • 문진석 • 박영순

전혜숙 · 장경태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경륜장,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에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레저세를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씩 안분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외발매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혼잡, 소음공해, 유흥업소 난립 등의 사회적 비용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에서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레저세 안분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되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단계적으로 100분의 80까지 높임으로써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안 제43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을 "다음 각 호의 안분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경륜장등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두 신고납부한다.
-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20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한다. 다만,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100분의 20을 신고납부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레저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최초로 레저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레저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특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43조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표의 비율을 적용한 세액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나머지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적용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비율	100분의 40	100분의 30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	제43조(신고 및 납부)
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	
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2조제1항에 따	
른 과세표준에 제4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	
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u>대통령령으로 정</u>	<u>다음 각 호의</u>
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	안분기준에 따라
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	
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1. 경륜장등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경륜장등
	<u>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u>
	·구청장에게 모두 신고납부한
	<u>다.</u>
<u>&lt;신 설&gt;</u>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
	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
	한 산출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100분의 20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한다. 다만,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그장외발매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그장외발매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20을 신고납부한다.